

보도자료



2021.11.4(목) 조간 배포 2021.11.3(수)



책 임 자

금융위 국제협력팀장 강 성 호(02-2100-2890)

보도

담 당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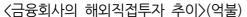
양 찬 석 사무관 (02-2100-289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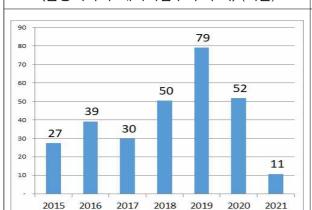
제 목 : 금융회사 해외진출 <u>활성화를 위한</u>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개정계획

- 금융회사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을 개정합니다.
 - 주요 개정시항은 [•]해외펀드 직접투자시 신고의무 완화 및 [®]일상적 영업활동 신고의무 면제 [®]해외상장법인 직접투자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있습니다.

1 추진배경

- □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「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^{*}」을 개정합니다.
 - *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시 금융위·금감원에의 신고·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
- □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**해외진출이 활발**해지면서, 금융회사가 **10% 이상의 지분**을 취득하는 **해외직접투자***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* 해외직접투자란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·확장하거나, 경영참가의 목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%이상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말함
 -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난 5년간(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, '15년~'19년) 3배 가량 증가했으며,
 - 해외직접투자의 방식도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대신, 해외 펀드(역외금융회사)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가 많아졌습니다.





〈해외펀드(역외금융회사)를 통한 직접투자 추이〉(억불)



- 한편, 해외 상장법인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.
 상장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전체 직접투자 규모의
 약 10% 이하에 불과하나,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
 - * 상장법인 직접투자: ('17)0.98억불 → ('18)1.10억불 → ('19)10.24억불 → ('20)4.89억불
- □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, 현행 신고규정은 해외펀드투자에 대해 엄격한 신고절차를 요구하거나, 일상적인 영업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 - 이에 금융회사의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
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〈 해외진출 신고제도 개요(현행) 〉

- □ (개요) 현행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신고제도는 ①각 금융업권별 관련 법규와 ②외국환 거래법규로 이원화
 - 해외진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목적은 **외화유동성, 외화자산 투자** 리스크 등 금융회사의 대외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함
 - 아울러, 경제 전체적으로는 해외투자내역 파악을 통해 외국환 시장의 수급과 대외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
- □ (세부내용) 금융기관이 금융·보험업에 대해 해외직접투자(증액투자 포함)를 할 경우, 금융위원회에 투자이전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
 - 다만, 누적 **3천만불 이하**의 투자시에는 **사후보고** 가능('20.3월 개정)

1.	2천만불	이하의	해외판	드 직접	투자시	사전성	신고 으	1무가 1	없어집	ЦЦ	ŀ.
	(현황) 투자전	해외편 사전신				자의	경우	금액고	라 관기	계없	이
*	반면,	해외법역	민 투자	·는 3천	만불 ㅇ	 하 의	경우	사후보	고 가	능	
	(개선) 금액(2 ²	해외펀! 천만불*)									
	* 해외판	선드 투자	평균금액	l, 해외펀드	Ξ 투자 ㅂ	빈도 등	을 감안	하여 산정	!한 기준	<u> </u>	
2.	해외펀드	투자시	지분	율 변동	을 일일	이 보	고할 됨	필요가	사라집	ШС	라 .
	(현황) 변동내'	금융회 <i>,</i> 역을 금					두지	-시 그	지분	· 율	및
C		ㅏ 펀드 ^및 -이 계속 ㅣ 보고 ㅎ	변동	될 수밖	에 없는	-데, ㅇ					
	,	펀드투> L고의무			· 최초·	투자의	경우	에만 1	10%	기준	에
Ċ	이후 ² 인한 3	추가적인 국내 금·				•					
3.	해외지점	점의 일성	상적 영	업활동	은 사전	선신고	대상(세서 제	외됩니	니다.	
	(현황) 같은 일	금융회시 상적 영 9								거래	와

- □ (개선) 그러나 위와 같은 일상적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(사후보고)*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 - *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은 본점 건전성 규제시 외화자산 위험가중치 등을 통해 관리가능

4.	애외상상업인에 내안 식섭투사시에는 세술서류가 간소와됩니다.
	(현황) 금융회사가 금융·보험업의 주식을 통한 해외투자를 할 경우,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매 투자건마다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	(개선)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상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,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* 합니다.
	* 단, 건전성·법률·경영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
5.	기타 개선사항
	그 외, ①금융기관 → 금융회사로 용어를 정비하고, ②금융회사의 해외 영업기금이 변동될 때의 신고규정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.
3	향후 추진계획
	본 규정은 금융위원회 고시로서, 11월중 규정변경예고(11.4일~11.18일)를 거친 후, 12월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입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<u>http://www.fsc.go.kr</u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